

[별표]<개정 1993.10.5>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영업의 종류	영 업 방 법	당첨금의 기준
복표발행업	1. 복표를 발매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추첨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 복표의 발매후에 당첨번호를 공개추첨하는 방법 나. 복표의 발매전에 당첨번호를 공개추첨하는 방법 다. 복표의 발매전에 당첨표시를 공고하는 방법 2. 복표의 추첨은 제1호 가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발매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발매개시 5일전에 하여야 한다. 3. 복표는 제1호 가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개봉 하여 발매하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밀봉하여 발매하여야 한다.	1. 당첨금의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금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당첨금의 등급은 4등급 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현 상 업	1. 특정한 설문에 대한 해답투표권을 발매하고, 해답이 확정되었을 때 정답자 또는 적중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해답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카 지 노 업	다음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되, 사행기구별 영업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루렛, 블랙잭, 다이스, 포카, 바카라, 다이사이, 키노, 빅힐, 빠이가우, 판탄, 조커세븐, 라운드크랩스, 트란타과란타, 프렌치볼, 차카락	사행기구별 영업방법에서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당첨금을 정한다.
투 전 기 업	1. 영업에 이용되는 투전기는 슬리트머쉰 또는 핀볼 머쉰이어야 한다. 2. 투전기에는 100원짜리 주화를 사용하되, 1회에 1개를 투입하여야 한다. 3. 당첨된 때에는 미리 정하여진 시상율표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4. 투전기의 종류별 세부적인 영업방법은 내무부령으로 한다.	1. 슬리트머쉰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은 100분의 87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첨금의 기초가 되는 바퀴 그림의 구성과 보통시상율표 및 특별시상율표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 핀볼머쉰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기타 사행행위업	1. 회전판돌리기 가.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원형의 판 (이하 "회전판"이라 한다)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참가자로 하여금 화살 등의 기구를 쏘거나 던지게한 후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기구가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한다. 나. 회전판에 표시된 기호중 당첨등급별 기호와 당첨 등급별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다. 참가자의 참가금액, 회전판을 향하여 쏘거나 던지는 기구와 사용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가. 당첨금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첨금의 등급은 4등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 구슬치기 가. 동전투입구에 동전을 넣고 발사대에 올라오는 구슬을 기계에 부착된 손잡이를 조작하여 차례로 발사한 후 발사된 구슬이 특정한 기호가 표시된 구멍에 들어감에 따라 쏟아진 구슬수의 합계에 따라 당첨금으로 생활용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구멍에 표시된 기호중 당첨기호와 당첨기호별로 쏟아지는 구슬의 수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다. 발사대의 구슬이 전부 발사된 후 구슬받이 용구에 쏟아진 구슬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된 구슬수에 따른 등급별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라. 동전투입구에 넣는 동전과 동전의 1회 투입시 발사대에 올라오는 구슬의 갯수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가. 당첨금으로 교부되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액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첨금의 등급은 4등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추첨 가. 추첨권은 번호만을 기입하고 등수에 따른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나. 추첨에 관하여는 추첨일시·추첨장소·추첨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추첨권에는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생략하고 인쇄날인하게 할 수 있다. 4. 경품 가. 경품권은 등수를 기입하고 등수에 따라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나. 경품권에 표시된 등수를 외부에서 투시 또는 확인할 수 없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가.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 판매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경품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관 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 을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 영업방법의 특성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영업방법의 특성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당첨 의 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정하여야 한다.

비고: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
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